

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안전점검(정기·정밀) 용역 계약서

계약자	관 리 주 체	서울터널 주식회사	
	계 약 상 대 자	• 상 호 : (주)명성엔지니어링 • 법인등록번호 : 131211-0040887 •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, 301호 • 대표자 : 김 선 무 • 전 화 번 호 : 031) 886-7422	
계약내용	계 약 건 명	안전점검(정기·정밀) 용역	
	총 액	일금 삼억팔천구백칠십팔만오천	원정(₩ 389,785,000)
	공 급 가	일금 삼억오천사백삼십오만	원정(₩ 354,350,000)
	부 가 가 치 세	일금 삼천오백사십삼만오천	원정(₩ 35,435,000)
	계 약 기 간	2022년 06 월 22 일 ~ 2027년 04 월 15일	
	위 치	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~ 영등포구 여의대로	
용	지 체 상 금 율	1000분의 1	

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2 년 06 월 22 일

불임서류 : 1.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약내역서 1부

(관리주체)

명 칭 : 서울터널 주식회사

대표자 : 대표이사 엄 주 동 (인)

(계약상대자)

명 칭 : (주)명성엔지니어링

대표자 : 대표이사 김 선 무 (인)

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서울터널 주식회사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안전점검의 실시자인 (주)명성엔지니어링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“갑”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“을”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·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,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·측정·평가하고 필요시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진단·점검의 범위) 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설물명 : 시설물(신원여의지하도로, 램프, 수직갱, 건축물)
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~ 영등포구 여의대로
3. 제 원 : L= 7.53km

제3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2022년 06 월 22 일 ~ 2027년 04 월 15일 이다.(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기간  확인후 내용 일치 필요)

② 다만,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)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계약상대자의 견적서에 의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안전점검의 항목 및 수량의 증·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3조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)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술용역공정예정표
2.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
3.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
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대가의 지급 등) 본 용역의 대가 지급은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제7조(실시자의 의무) ① “을”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,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.

② “을”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“갑”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·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“을”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안전점검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,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시결과의 통보) ① “을”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“갑”에게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하도급 금지) “을”은 “갑”과 계약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재하도급할 수 없다.

제10조(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) ① “을”은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“갑”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·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갑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다만,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“갑”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리주체의 의무)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시설물의 상태평가·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

비교평가하기 위하여 “갑”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 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갑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“갑”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“을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인·허가 사항 등) “을”이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·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“갑”은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하자보증)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중 발생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“발주자”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

단) 유가증권,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4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
2. “갑” “을”이 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
3. “갑”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“을”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
4. “을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

제15조(보안사항) “을”은 안전점검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·후를 막론하고 “갑”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.

제16조(이행 의무사항) “을”은 입찰(‘22.06.17) 시 제공받은 ‘견적의뢰서’, ‘입찰설명서’, ‘질의회신(e-mail)’ 등 제공받은 조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